

#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5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3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송옥주 · 이개호  
이성윤 · 박민규 · 서삼석  
이정문 · 임오경 · 김 현  
임미애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

현행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·시행하되,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상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며, 타당성 재검토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급변하는 해역 환경과 국지적인 오염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한편, 해양폐기물 관련 사항들을 심의·조정하고 있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민간의 전문성과 대표성 참여가 부족하고, 중앙-지방-현장 간 거버넌스가 단절되어 있어 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

도 존재함.

이에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·조정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, 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,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·조정사항,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변경하도록 함(안 제5조제1항).
- 나.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과위원회 설치·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는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의2제6항, 같은 조 제7항 및 제9항 신설).
- 다.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고, 민간단체등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.
- 라. 관리센터의 업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고,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·법인 또는

단체를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).



##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5년이 지나면”을 “5년마다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·조정 사항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”로, “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.”를 “재검토하고,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기후위기에 따른 해양폐기물 발생 예측 및 감축 등 해양폐기물 전주기 대응에 관한 사항

9. 해양폐기물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관한 사항

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위원회의”를 “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7항) 중 “위원회의”를 “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”로, “실무위원회”를 “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”로 한다.

다만,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⑦ 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위원회는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⑨ 제7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심의 방법,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6조제목 “실태조사”를 “실태조사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할 수 있다”를 “매년 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4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원인 파악 및 감축 등 정책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(이하 이 조에서 “민간단체등”이라 한다)가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, 민간단체등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등이 실태조사 또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 구축·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

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7조제1항 중 “관리센터”를 “관리센터(이하 “관리센터”라 한다 “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 따른”을 “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정 외에”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과 관련한 조사·연구 및 국제협력
2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합 관리
3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저감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
4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저감을 위한 민간의 협력 및 참여 활성화
5. 관계부처 요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관한 정보 및 기술 자문 제공
6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련 연구기관·민간단체 등의 자문 및 의견 수렴
7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

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
3.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1. ~ 7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8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제5조의2(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)

① · ② (생략)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<단서 신설>

1. · 2. (생략)

④ · ⑤ (생략)

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<신설>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기후위기에 따른 해양폐기물 발생 예측 및 감축 등 해양폐기물 전주기 대응에 관한 사항

9. 해양폐기물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관한 사항

10. (현행 제8호와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5조의2(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)

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. 다만,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⑥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-----  
-----  
-----.

⑦ 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

⑦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심의 방법, 실무위원회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6조(실태조사) ①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 설>

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위원회는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-----  
-----분과위원회  
및 실무위원회-----  
-----.

⑨ 제7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심의 방법,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6조(실태조사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매년 하여야 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원인 파악 및 감축



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과 관련한 조사·연구 및 국제협력

2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합 관리

3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저감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

4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저감을 위한 민간의 협력 및 참여 활성화

5. 관계부처 요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관한 정보 및 기술 자문 제공

6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련 연구기관·민간단체 등의 자문 및 의견 수렴

7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과 시설을 갖춘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
3.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

<p>② <u>제1항에 따른</u> 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</u></p> <p>⑥ <u>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정 외에</u>----- ----- -----.</p>
--	---